

보도시점 2026. 2. 11.(수) 12:00 / 배포 2026. 2. 11.(수) 08:30
< 2. 12.(목) 조간 >

‘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①현금·수표, ②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③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 (현금성결제) ①현금·수표, ②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촉진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개요 】

- ▶ [공시 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 [공시대상 항목]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현금, 수표, 어음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 분쟁조정기구
- ▶ [공시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5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까지 총 다섯번째 공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였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현황>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이었다.

2025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엔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로 파악되었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엔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 집단별로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포스코(9개), 롯데(7개), 엘지(6개), 에스케이(5개) 순임

【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 】

구 분	'23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공시 사업자수	80개 집단 1,210개	82개 집단 1,297개	88개 집단 1,396개	88개 집단 1,384개	91개 집단 1431개
지급수단별					
현금결제	84.02%	85.67%	85.24%	86.19%	90.6%
현금성결제	97.19%%	98.54%	98.19%	98.58%	98.2%
지급기간별					
30일 내	87.12%	87.64%	87.79%	86.68%	87.07%
60일 내	99.63%	99.81%	99.86%	99.86%	99.89%
분쟁조정기구	98개 (8.1%)	108개 (8.3%)	120개 (8.5%)	129개 (9.3%)	131개(9.1%)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점검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공시기간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공시를 한 경우는 미공시 사유에 해당함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예) 항목별 소계·합계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단위를 잘못 표시한 경우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2025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4583)
		담당자	서기관	김대영 (044-200-4585)
			조사관	배민성 (044-200-4590)

붙임 1

2025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 (‘23.1.12. 시행)
- 하도급법에 따라 2025 8. 14.까지 2025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2

점검 내용

- ☐ (공시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 (공시대상 항목)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을 공시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현금(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

*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1일~60일,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2일~60일, 60일 초과), 어음(만기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

③ (분쟁조정기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방법

- ☐ (공시 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공시현황) 전체 91개 집단 1,431개 소속회사*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2025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없는 등 공시대상 항목이 없는 회사는 '0', '-'와 같이 공란공시하거나 미공시하였음

- (공시의무 위반) 미공시 3개 사업자, 지연공시 3개 사업자

※ 미공시·지연공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이하 <4.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제재> 참조

- (지급금액)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순임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집단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1	현대자동차	12.13조원	6	씨제이	4.01조원
2	삼성	9.58조원	7	롯데	3.39조원
3	HD현대	6.54조원	8	엘에스	3.1조원
4	한화	5.22조원	9	에스케이	2.86조원
5	엘지	4.59조원	10	포스코	2.75조원

※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의 상세 현황은 <붙임 2> 참조

- (지급수단별)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 %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편임

* 전체 하도급대금 중 이하 방식으로 대금 지급한 비율

- ▶ (현금결제비율) ① 현금·수표 ②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③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 (현금성결제비율) ① 현금·수표 ②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기업집단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인 것으로 나타남

-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엔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남

□ (지급기간별)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07%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음

- 지급기간별 대금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5.88%, 15일 이내 66.98%로 대금의 약 67% 정도가 15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짐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 비중

구분	10일 이내	11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0일 초과
비중	45.88%	21.10%	20.09%	12.83%	0.11%

-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 (기업집단별) 91개 기업집단 중 71개 기업집단(78%)은 60일 초과 대금지급 비율이 0.1% 이하로 매우 낮음

*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 비율이 2% 이상인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엔컴퍼니그룹(2.05%), 신영(2.02%)이 있음

□ (분쟁조정기구)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포스코(8개)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분석) '25년 상반기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30일내 및 60일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 】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공시 사업자수	80개 집단 1,210개	82개 집단 1,297개	88개 집단 1,396개	88개 집단 1,384개	91개 집단 1,431개
지급수단별					
현금결제	84.02%	85.67%	85.24%	86.19%	90.6%
현금성결제	97.19%	98.54%	98.19%	98.58%	98.2%
지급기간별					
30일 내	87.12%	87.64%	87.79%	86.68%	87.7%
60일 내	99.63%	99.81%	99.86%	99.86%	99.89%
분쟁조정기구	98개 (8.1%)	108개 (8.3%)	120개 (8.5%)	129개 (9.3%)	131개(9.1%)

4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제재 등

- ☐ (미공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 에이치에스 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개 사업자의 미공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 ☐ (지연공시)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3개 사업자의 지연공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시규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내역 >

사업자명	기업집단명	위반유형	과태료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	카카오	미공시	500만원 이하(예정)
마이스터모터스	효성	미공시	500만원 이하(예정)
에이치에스 효성오토웍스	효성	미공시	500만원 이하(예정)
스튜디오엠앤씨	태영	지연공시(13일)	50만원(既부과)
희망별숲	삼성	지연공시(4일)	30만원(既부과)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에스케이	지연공시(4일)	30만원(既부과)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 여부 및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적용

- ☐ (단순 누락오기)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였음

* (예) 항목별 소계·합계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단위를 잘못 표기한 경우 등

붙임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BGF	100.00%	100.00%	0.05%	0.08%	99.73%	0.09%	0.00%	292,505
BS	100.00%	100.00%	7.66%	9.30%	42.86%	39.59%	0.60%	328,055
DB	100.00%	100.00%	7.90%	9.63%	67.20%	15.28%	0.00%	68,786
DL	65.72%	100.00%	36.97%	29.58%	16.42%	16.86%	0.17%	1,844,610
DN	5.84%	100.00%	71.07%	4.43%	23.62%	0.89%	0.00%	448,713
HD현대	90.29%	99.99%	34.31%	41.27%	19.46%	4.96%	0.00%	6,542,576
HL	46.23%	100.00%	45.32%	6.25%	32.05%	16.37%	0.01%	980,164
KG	23.36%	23.36%	65.78%	17.58%	12.10%	3.43%	1.11%	620,735
SM	93.84%	93.84%	8.42%	2.81%	28.48%	57.09%	3.20%	539,249
고려에이치씨	97.70%	100.00%	7.86%	18.31%	53.79%	20.04%	0.00%	255,599
교보생명보험	100.00%	100.00%	7.27%	15.27%	42.19%	35.01%	0.27%	44,236
글로벌세아	96.90%	96.90%	7.92%	7.17%	9.30%	75.26%	0.35%	611,344
금호석유화학	70.06%	100.00%	54.31%	1.39%	23.56%	20.74%	0.00%	156,102
네이버	100.00%	100.00%	67.57%	16.79%	9.70%	5.94%	0.00%	118,328
넥슨	100.00%	100.00%	15.21%	26.82%	48.21%	9.76%	0.00%	7,930
넷마블	98.11%	98.11%	8.15%	76.01%	11.67%	4.17%	0.00%	449,788
농심	43.38%	100.00%	38.19%	13.74%	41.39%	6.38%	0.30%	198,412
농협	100.00%	100.00%	22.49%	24.88%	33.50%	19.09%	0.05%	583,066
다우키움	99.97%	100.00%	35.42%	42.62%	12.57%	9.33%	0.06%	20,027
대광	100.00%	100.00%	17.53%	6.64%	37.26%	38.57%	0.00%	80,494
대방건설	100.00%	100.00%	0.63%	9.30%	28.09%	57.89%	4.09%	85,340
대신	100.00%	100.00%	28.99%	19.30%	34.74%	16.98%	0.00%	538
동국제강	82.87%	99.23%	14.98%	1.57%	62.21%	21.23%	0.01%	234,009
동원	62.48%	100.00%	16.28%	24.37%	30.24%	28.89%	0.22%	867,579
두나무	100.00%	100.00%	7.02%	49.40%	39.46%	4.12%	0.00%	19,688
두산	43.42%	100.00%	49.12%	33.51%	6.71%	10.61%	0.06%	1,184,867
롯데	86.29%	99.91%	48.62%	17.87%	29.20%	4.30%	0.01%	3,385,163
미래에셋	100.00%	100.00%	17.16%	46.14%	32.44%	4.26%	0.00%	7,591
반도홀딩스	79.21%	79.21%	3.55%	16.11%	63.02%	17.30%	0.01%	175,759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부영	65.94%	100.00%	34.57%	38.86%	25.99%	0.59%	0.00%	30,198
빗썸	100.00%	100.00%	0.86%	3.62%	83.61%	11.90%	0.00%	7,569
사조	60.24%	64.98%	32.42%	19.25%	31.38%	16.53%	0.43%	312,866
삼성	61.92%	100.00%	64.91%	21.73%	10.62%	2.74%	0.00%	9,580,739
삼양	67.03%	99.99%	36.72%	18.75%	28.10%	16.43%	0.00%	126,155
삼천리	100.00%	100.00%	3.84%	3.47%	78.60%	14.10%	0.00%	48,243
삼표	75.81%	100.00%	12.09%	5.89%	79.48%	2.53%	0.00%	131,824
세아	71.29%	97.80%	11.27%	37.27%	13.47%	37.38%	0.61%	323,968
셀트리온	89.35%	89.35%	2.30%	2.49%	7.88%	87.34%	0.00%	57,126
소노인터내셔널	100.00%	100.00%	11.64%	6.09%	56.57%	25.65%	0.06%	158,130
신세계	66.51%	99.95%	53.91%	24.37%	19.75%	1.98%	0.00%	1,228,513
신영	100.00%	100.00%	15.28%	7.20%	44.49%	31.02%	2.02%	87,997
씨제이	61.97%	99.99%	26.75%	17.99%	32.77%	22.48%	0.01%	4,007,717
아모레퍼시픽	67.96%	100.00%	60.15%	5.09%	28.46%	6.30%	0.00%	336,432
아이에스지주	32.20%	32.20%	11.63%	2.98%	72.20%	13.18%	0.00%	140,654
애경	50.24%	99.54%	7.78%	3.06%	31.94%	57.22%	0.01%	151,717
에스케이	76.21%	99.99%	53.88%	13.89%	23.59%	8.53%	0.11%	2,858,014
에쓰-오일	100.00%	100.00%	0.02%	35.16%	43.14%	21.68%	0.00%	22,242
에이치디씨	93.69%	100.00%	54.37%	31.09%	12.98%	1.55%	0.00%	1,132,503
에이치엠엠	100.00%	100.00%	14.47%	2.47%	37.13%	45.94%	0.00%	36,046
에코프로	96.67%	100.00%	3.07%	6.12%	14.20%	76.61%	0.00%	76,377
엘아이지	76.05%	98.67%	68.29%	18.80%	6.01%	6.80%	0.09%	844,965
엘에스	40.03%	99.90%	55.12%	16.34%	18.19%	10.34%	0.00%	3,099,875
엘지	41.70%	98.84%	82.05%	9.40%	4.88%	3.92%	0.01%	4,593,382
엠디엠	100.00%	100.00%	23.67%	16.03%	40.49%	19.81%	0.00%	27,958
영원	95.39%	100.00%	26.88%	22.35%	30.08%	20.69%	0.00%	92,283
영풍	77.21%	99.32%	31.57%	30.19%	19.00%	19.23%	0.01%	230,959
오씨아이	62.69%	74.42%	6.68%	1.26%	39.69%	52.12%	0.24%	346,219
오케이금융그룹	100.00%	100.00%	9.17%	12.24%	78.58%	0.00%	0.00%	3,155
원익	96.06%	99.54%	3.15%	67.46%	19.36%	9.98%	0.05%	376,694
유진	95.76%	100.00%	9.59%	7.96%	61.88%	20.57%	0.00%	233,280
유코카캐리어스	100.00%	100.00%	100.00%	0.00%	0.00%	0.00%	0.00%	1

기업집단명	지급수단별(단위: %)		지급기간별(단위: %)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현금 결제비율	현금성 결제비율	10일 이내	11일~ 15일	16~ 30일	31~ 60일	60일 초과	
이랜드	100.00%	100.00%	15.87%	11.13%	29.43%	34.73%	8.84%	180,185
장금상선	100.00%	100.00%	4.04%	10.65%	20.59%	64.63%	0.09%	110,523
중앙	98.22%	100.00%	42.12%	14.52%	29.40%	13.63%	0.32%	220,204
중흥건설	93.40%	100.00%	61.37%	18.61%	11.22%	8.76%	0.04%	2,471,695
지에스	90.66%	100.00%	71.62%	11.73%	8.77%	7.81%	0.05%	2,712,110
카카오	100.00%	100.00%	38.00%	13.20%	25.63%	23.17%	0.00%	298,321
케이씨씨	85.75%	100.00%	31.08%	4.45%	56.19%	8.21%	0.07%	714,049
케이티	97.24%	97.69%	19.14%	16.48%	50.90%	13.32%	0.17%	1,537,348
케이티앤지	99.55%	99.55%	11.74%	2.62%	16.09%	69.39%	0.16%	341,705
코오롱	72.89%	100.00%	16.13%	18.51%	20.88%	44.42%	0.05%	855,951
쿠팡	73.17%	100.00%	0.64%	30.86%	32.78%	35.71%	0.02%	1,817,973
크래프톤	100.00%	100.00%	82.67%	5.69%	11.48%	0.17%	0.00%	2,168
태광	100.00%	100.00%	4.26%	5.57%	70.74%	19.43%	0.00%	74,573
태영	89.86%	99.99%	5.27%	14.25%	59.17%	20.50%	0.81%	258,919
파라다이스	100.00%	100.00%	0.00%	0.00%	100.00 %	0.00%	0.00%	58
포스코	92.86%	100.00%	29.68%	38.80%	17.28%	14.23%	0.01%	2,754,441
하림	96.55%	96.99%	50.88%	23.30%	20.29%	5.52%	0.01%	185,176
하이브	100.00%	100.00%	6.80%	1.75%	76.88%	14.57%	0.00%	137,957
하이트진로	27.43%	100.00%	7.01%	21.12%	17.56%	54.31%	0.00%	93,667
한국엔컴퍼니	9.83%	95.36%	66.35%	5.71%	15.98%	9.91%	2.05%	948,320
한국지엠	100.00%	100.00%	0.00%	0.00%	0.00%	100.00%	0.00%	1,114,800
한국항공우주	86.06%	86.06%	78.12%	2.46%	4.92%	14.50%	0.00%	339,411
한솔	77.73%	99.77%	14.80%	6.57%	42.40%	36.21%	0.02%	286,041
한진	100.00%	100.00%	5.40%	7.34%	79.87%	7.39%	0.00%	1,018,304
한화	77.55%	99.60%	56.62%	15.99%	14.13%	13.14%	0.04%	5,223,148
현대백화점	42.34%	96.01%	32.24%	12.27%	43.73%	11.76%	0.00%	876,833
현대자동차	64.21%	99.52%	52.78%	27.78%	13.17%	6.26%	0.01%	12,127,717
현대해상화재보험	100.00%	100.00%	9.82%	24.54%	59.05%	6.59%	0.00%	27,109
호반건설	88.43%	91.78%	75.88%	15.99%	6.72%	1.40%	0.01%	716,546
효성	78.04%	98.45%	54.72	17.28	8.64	19.33	0.03	929,690

붙임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2022. 1. 11. 개정, 2023. 1. 12. 시행)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유하여 하도급 전 단계에서의 거래 조건 개선 유도
- (주요내용)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
 -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현금(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
 - *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
 - **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
 -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
 - * 10일 이내, 11일 ~15일 이하, 16일~30일 이하, 31일~60일 이하, 60일 초과
 - ③ (분쟁조정기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방법
- (공시 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공시 빈도 및 시기) 공시는 매 반기마다 하되,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함
- (공시 방법) 전자공시시스템(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양식(전자문서) 제출

< 공시대상 항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참조)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 타	계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 계		
지급 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⑯(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